

의안번호	2208540
의 퇴 인	구자근 의원
회 답 일	2025. 3. 5.
추계번호	25F119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로봇 분야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로봇을 추가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로봇 등을 포함한 9개로 확대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로봇을 포함하는 경우, 해당 분야의 연구·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)
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 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로봇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
 -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
 - 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로봇 분야 추가
 - －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로봇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로봇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로봇 분야는 현재 신성장·원천기술에 포함되어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로봇 분야의 범위

기술분야		기술
로봇	첨단제조 및 산업로봇	(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 로봇 기술) 청정환경용 반도체 로봇 기술, 10나노급 초정밀 공정용 매니플레이션 기술 등 (차세대 태양전지 제조 기술) 태양전지 생산현장용 로봇 설계 제조기술 등 (실내외 자율이동 작업수행 로봇 기술) 실내외에서 경로를 계획하는 지능형 로봇 설계기술 등 (FPD 이송로봇 기술) 고중량 FPD 및 마스크를 이송하는 로봇 설계, 제조기술 등 (협동기반 차세대 제조로봇 기술) 협업이 가능한 초소형 및 중대형 로봇 기술 등 (용접로봇 기술) 6축 이상의 용접용 수직다관절 로봇, 용접전원장치, 센서 설계 제조 기술 등
	안전로봇	(감시경계용 서비스로봇을 위한 주변환경 센싱기술 등) 실내외에서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감시경계를 수행하기 위한 센서융합, 위치인식, 환경인식 및 주행기술 등 (내단열 기능이 구비된 험지 돌파형 소형 구조로봇 플랫폼 기술) 고속주행 소형이동 로봇의 장비 내외부 내화설계 기술, 강제 내화시스템 설계 기술 등
	의료 및 생활로봇	(수술진단 및 재활 로봇 기술) 진단 보조, 시술 및 수술 보조 등 의료로봇 기술 등 (간병 및 케어 로봇 기술) 단순반복 업무 및 환자의 정서케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로봇 서비스 시스템 기술 등 (안내, 통역, 매장서비스, 홈서비스 등의 안내로봇 기술)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안내 및 홍보하는 로봇 기술 등 (Tele-presence 로봇 기술) 원격 진료자문 및 교육이 가능한 Tele-presence 로봇 기술 등 (생활도우미 응용 서비스 기술) 일상생활 및 가사노동을 지원하는 지능형 로봇 기술 등 (유치원, 초등학교 교사 보조 교육로봇 기술)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적합한 교육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교사를 보조하여 학습하는 교육로봇 기술 등
	로봇공통	(실내외 소음환경에서의 대화신호 추출 기술) 소음이 있는 환경의 원거리에서 고신뢰의 음성인식, 음성으로부터 문자형태의 인식을 기반으로 대화하는 기술 등 (모터, 엔코더, 드라이버 일체형의 구동기술) 로봇용 관설구성에 필요한 모터 등을 하나의 몸체에 만든 관절구동형 액츄에이터 기술 등 (웨어러블 로봇 기술) 착용자의 신체능력 증강 및 운동을 지원하는 착용형 로봇 기술 등 (직관적 교시 기술) 코딩 없이 직관적 방식으로 로봇에 동작을 입력하는 SW 기술 등

- 또한, 로봇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 - 참고로,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23,760	9,492	11,968
통합투자세액공제	10,332	38	7,4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로봇을 추가하는 내용 외에도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이는 현행 법령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적인 세입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음에 따라 추계하지 않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